



Vol. 03

2022.03.14.

& Customs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545-5115

F. 02-3444-5115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김아람전임 arkim@hjcustoms.co.kr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 예고

III. 조세심판원 사례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 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협정관세율 및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함.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조사결과의 통지기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구분	내용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	<p>1)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p> <p>2)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p> <p>3)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상대국과 협의 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에 이들 국가를 포함시킴.</p>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플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이 되는 수출자 등에게 현장조사의 일시 · 장소와 준비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덤플 사실 또는 보조금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등에 관한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3) 시행일

'22.02.01.

I. 법령 개정사항**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 개정 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금지 포장 및 광고 문구 명확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문구에 대하여 국민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광고에 표시하는 문구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등을 알 수 있도록 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등을 추가
살생물제품 관련 특례 신설	제품의 효과·효능을 알리는 문구를 정하고 이를 광고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살생물제품에 대하여는 광고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를 늦추는 특례를 부칙에 신설

(3) 시행일

'22.02.10.

I. 법령 개정사항**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 개정****(1) 개정 이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적정 발급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마련하는 등 발급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변경으로 인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납세자의 '고의·중대한 잘못'을 제외하곤 수입수입세금계산서를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발급 사유 확대(20개월 기준 10% 기간 이내·품목 10% 미만의 신고 오류, 경미한 과실로 인정). 무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해 유사물품과의 단가차이를 점검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며, 과세가격 결정방법 변경 및 품목분류 변경과정에서도 발급을 허용도록 조문 신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청 규정 신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칙적으로 허용 토록 하는 운영지침 변경에도 불구하고,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미발급의 적정성을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3) 시행일

'22.02.07.

I. 법령 개정사항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전대차 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다양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개별소비세 이중부과 방지를 위한 공제 사유 추가	부득이한 공제 사유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으로 정함.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력세율 적용범위 확대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함.

(3) 시행일

'22.02.15.

I. 법령 개정사항

5.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국제무역선 등에서 구입·환불한 물품의 관세 환급절차,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 제출절차,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범위를 확대하고,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하여,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절차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정하고,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국제무역선 등에서 구입한 물품의 환불에 따른 관세 환급절차	여행자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로 정하고,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 확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 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함.
가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인하함.

구분	내용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절차 구체화(1)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작업의 종류 · 기간 및 장소 등뿐만 아니라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 · 규격 등도 신청서에 적어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장소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평가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 제공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2) 관세청장은 전자문서 위조 · 변조죄나 밀수출입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 제출절차	통관우체국의 장은 국제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우편물 번호, 발송 · 도착 예정일시 등의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 인상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여 관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로 징수된금액이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 산정에 적용되는 지급률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함.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와 항공사가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거나 출항허가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차 위반 시 6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시행일

'22.02.15.

I. 법령 개정사항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을 다양화하고, 국외재산 증여세에 대해 외국납부 세액 공제 신청을 할 때 함께 내는 증명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국제거래자료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추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때 종전에는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만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성격의 율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활용하여 계산한 이자율도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설	'자금통합거래'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유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성 기업 중에서 기업집단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선정하여 모든 구성 기업의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관리함에 따라 그 구성 기업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자금통합 거래관리자와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자금통합거래에서 얻는 편익을 고려하여 자금통합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함

구분	내용
정상가격 산출 시 비교가능한 거래 대상 확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통상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가격 비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기침체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상황 변동을 반영한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하도록 함.
국외재산 증여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증명서류 제출기한 연장	거주자는 국외재산 증여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외국 납부 증여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까지 공제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3) 시행일

'22.02.15.

I. 법령 개정사항**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1) 개정 이유**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구 사유 구체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행일

'22.02.15.

I. 법령 개정사항

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 정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을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로 정의함.
비대면 조사 근거 신설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비대면 조사 시에도 현지실사 거부 시와 마찬가지로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 근거 신설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 명령 등 불이행 시 과태료 근거를 신설함.
과징금 상한액 상향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함.

(3) 시행일

'22.02.18.

I. 법령 개정사항

9.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 강제처분 및 판매중지명령 등 위해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율러, 간신과 관련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 처분기준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허가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성·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변경을 조건으로 간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위해 의료기기 등에 대한 조치명령 유형에 회수·폐기·공표명령 외에 판매중지를 추가 하고, 조치명령 대상의료기기 요건을 '국민건 강에 중대한 피해 및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 성 있는 의료기기'에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로 완화함.
간신 관련 과태료 조항 삭제	간신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 간이 끝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자에 대 한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을 마련하고, 이와 관 련된 과태료 조항은 삭제함.
허가변경 조건의 간신 근거 마련	간신을 받으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안전성 · 유효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허 가등의 변경을 조건으로 간신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22.02.18.

I. 법령 개정사항

10.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거짓 등의 방법으로 허가·인증 등을 받거나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제조·수입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그 사용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폐기명령뿐만 아니라 판매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과징금 부과금액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제조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조허가를 받아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품목의 제조금지,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위반 품목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정함.
판매중지명령 권한의 위임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나 허가·인증 등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판매중지명령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한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3) 시행일

'22.02.18.

I. 법령 개정사항

1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1) 개정 이유**

시판 후 조사의 절차·방법, 봉함 대상 의료기기의 봉함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만으로 개발·제조되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승인 및 결과 보고	시판 후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기의 시판 3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판 후 조사결과 보고를 시판 후 조사계획 승인일부터 최초 1년까지는 6개월마다, 1년 이후에는 1년마다 하도록 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업의 시설기준 등 완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작업소, 시험실 등을 갖추지 않아도 제조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소 시설기준을 완화함.
봉함 대상 의료기기 및 봉함 방법 마련	봉함 대상 의료기기를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멀균 포장된 제품, 개봉하여 유통하는 경우에 오염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제품인 주사기, 주사침, 콘택트렌즈 등으로 정하고, 봉함 방법은 용기 또는 봉함을 뜯지 않고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고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22.02.18.

II. 입안 예고

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관세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관세 환급대상을 정하는 한편,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 등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에 대한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정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단체 구성원이 사용할 대회관련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기존에 종료된 국제행사 물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삭제함.
물품가격 산정방식 명확화	소액물품 면세 등을 적용하기 위한 물품가격의 산정방식을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송 관련 비용을 뺀 가격으로 하되, 운송 관련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
수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환급되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대상 구체화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은 수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관세를 환급받도록 함.
출국 내국인 대상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폐지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조항을 삭제함.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추가	<u>전신 종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및 신경섬유종증 1형</u> 환자에게 사용할 치료제를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를 지원함.

II. 입안 예고**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 이유**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 의약품 치료제를 확대하며, 간편사업등록자가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확대	<u>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1형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u> 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제출방법 규정	국세청장이 간편사업등록자에게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자는 별지제37호의3서식을 제출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를 전자파일로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

II. 입안 예고**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 이유**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 선정 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연간 제조 · 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신청시 물질의 특성, 용도를 고려하여 일부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신청시 일부 정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려는 경우 중점 관리물질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성, 국내 유통량 규모, 사용자 범위 및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의 규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하도록 함.
화학물질 등록신청시 일부 시험자료의 제출 간소화	연간 제조 · 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이면서 물용해도가 1mg/20미만이거나, 중간체 (Intermediates)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Process regulators) 용도에 한정하여 제조 ·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자료작성방법	국외제조 · 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규화학물질 신고면제확인 신청서에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수렴기간

~ '22.03.30.

III. 조세심판원 사례**1. 쟁점물품을 제9702호의 오리지널 판화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4911호의 그 밖의 인쇄물로 분류할지****(1) 주요내용**

가. 청구인은 2021.5.3. 000 소재 000 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 호로 000 가 제작한 000 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오리지널 판화’가 분류되는 HSK 제9702.00-1000호(관세율 0%,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함.

나. 처분청은 2021.5.3. 위 가.의 수입신고 사항을 심사하던 중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 · 디자인 · 사진’이 분류되는 HSK 제4911.91-9000 호(관세율 0%, 부가가치세율 10%)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품목번호를 재검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1.5.3. 수입신고 수리전 정정 신청을 통해 처분청이 안내한 품목번호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면서 그에 따라 산출된 부가가치세 000 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5.3.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함.

다. 청구인은 2021.5.4. 위 나.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알고, 2021.8.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당초 수입신고한 것과 같이 HSK 제 9702.00-1000 호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다음의 사유에 따라 달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1) 「관세법」 제 119 조 제 1 항에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 등

2) 이 건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한 품목번호와 다른 품목번호를 안내한 사실과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만 확인될 뿐 달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3) 결정일

'22.01.28. (조심 2021 관 0108)

III. 조세심판원 사례

2. 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로 분류할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6.6.9.부터 2019.4.15.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 8518.22-0000 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4.8~6.4%, 이하 “제 8518 호”라 한다]의 ‘인클로저(enclosure, 스피커 통)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함.

나. 청구법인은 2021.3.12.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 8519.81-2900 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0%, 이하 “제 8519 호”라 한다)의 ‘기타 자기식. 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000 원 및 부가가치세 000 원 합계 000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1.4.15. 이를 거부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1.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 재조사 및 그에 따른 결정

다음의 사유에 따라 이 건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목번호 결정 및 경정청구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 8518 호의 확성기와 제 8519 호의 음성 재생기기로 구성된 복합기계에 해당하고, 그 주 기능이 확성기에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 8518 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USB 음성 재생기능과 관련하여 신호가공처리를 하여 증폭기를 통해 증폭하여 소리를 재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 8519 호에서 음성 재생기기에 확성기와 증폭기가 부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리하여 확성기 제 8518 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초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사전회신물품을 음향장치 및 증폭기가 부착되어 있는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로 보아 제 8519 호로 분류하였던 점 등

2) 쟁점물품에 포함된 DSP 처리부의 기능이 단순히 음원으로부터 전달된 전기적 신호를 소리 신호로 변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호기(decoder)에서 USB로부터 압축된 부호화된 오디오 파일을 읽어 들이고, 이를 복호화하여 복원한 후 신호가공처리를 하여 증폭기로 전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000 세관장은 2020.3.12.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 동일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던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외국으로 수출하는 TV 용 사운드 바에 대해서 제 8519 호로 경정하였던 점 등

(3) 결정일

‘22.02.08. (조심 2021 관 0058)

III. 조세심판원 사례

3. 세액 경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등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6.8.13.부터 2018.9.17.까지 특수관계자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 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처분청은 2020.7.7.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 35 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1.3.26. 청구법인에게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조기경정을 요청하자, 2021.4.14. 청구법인에게 관세 000 원, 부가가치세 000 원 및 가산세 000 원 합계 00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4.27. 처분청에 위 부가가치세에 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1.5.17. 이를 거부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취소

다음의 사유에 따라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등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수입원재료 가격의 인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제 3 자간의 거래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수출자가 000 국내에서 제 3 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쟁점수출자의 마진을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바, 2013년 000 세관장의 기업심사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통지되었고, 이 건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인하는 쟁점수출자의 마진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거래가격 인하 후 쟁점수출자의 마진율은 00%에 달하여 이렇게 인하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곧바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 35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2) 청구법인에게 1)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달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3) 결정일

'22.02.08. (조심 2021 관 0101)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1. 관세청, 미래 성장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한국판 뉴딜, 기술혁신 등 미래성장 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1. 지원 대상**

'21년 지원 대상이었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지진, 태풍 등 각종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더해, 금년에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기업, 기술, 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2. 지원 내용

- 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 제공을 생략해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중소 중견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도 활성화 한다.
- ③ 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세관장이 직접 미 환급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한다.

[지원 안내]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되므로 기업들은 가까운 세관에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 코로나 19 등 재난 피해기업 확인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 452-3639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 510-1378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 620-6954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 230-5182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 975-8193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32